



명예졸업에 관한 규정

규정번호	2-4-8
제정일자	2009. 12. 7.
개정일자	2024.3.20.
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수여대상) 명예졸업증서는 신안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에 입학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로서,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1.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크게 공헌한 자
2. 본교의 명예를 빛내거나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
3. 기타 총장이 명예졸업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3조(인정학과) 명예졸업의 학과는 명예졸업 대상자의 입학당시 학과로 한다.

제4조(수여절차) 명예졸업증서 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명예졸업대상자의 소속 학과장이 추천하고, 명예졸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한다.

1. 명예졸업증서 수여 추천서 <별지 제1호>
2. 추천사유 증빙서류 1부

제5조(수여시기) 명예졸업증서의 수여 시기는 본 대학 학위 수여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6조(수여자의 관리) ①명예졸업자의 학적부 학위 등록번호란에 “명예졸업”이라 표기한다.

- ②명예졸업자는 명예졸업자 명부에 명예졸업증서의 수여 근거를 기록하여 보관한다.
- ③명예졸업자에 대하여는 제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.

제7조(대우) 명예졸업자에게는 본 대학의 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8조(졸업의 취소) 명예졸업자가 본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명예졸업자로서의 품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총장은 명예졸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. <2019.11.14. 개정>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]

명예졸업증서 수여 추천서

수여대상자 인적사항	성명		주민 등록번호	
	주소		연락처	
학적사항	입학	년 월 일	학과	
	제적	년 월	(미등록, 미복학, 자퇴, 기타)	
추천 사유				
<p>상기인에 대하여 신안산대학교 명예졸업증서 수여 규정에 의거, 명예졸업증서 수여를 추천합니다.</p>				
년 월 일				
추천자 _____ 학과장 : (인)				
신안산대학교 총장 귀하				

[별지 제2호]

명예 제 호

명예졸업증서

성명 ○ ○ ○
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생

위 사람은 본 대학 ○○ 학과 ○ 학년 재학 중

하였기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함

○○○○ 년 ○○ 월 ○○ 일

신안산대학교 총장 지의상